

2020 - 393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85호(2013.09.05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378호(2019.11.21.)로 변경 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4일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

정비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	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일대	15,669.1	-

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: 2022.08.28.까지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

3. 관련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2) 및 영등포구 주택과(☎02-2670-3666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20 - 394

()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5-8번지 일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이하 ‘전통시장법’)」 제3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30조에 따라 2020년 제2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(2020.06.15.)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 승인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4일

서울특별시

I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

1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

가. 구역명칭 : 길음시장정비구역

2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

구분	구역명칭	위치	면적 (㎡)	비고
신설	길음시장 시장정비구역	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-8번지 외 7필지	10,470	인접지역 포함

3. 시장정비사업 시행자

가. 성명 : 길음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(대표자 : 공은지)

나. 주소 :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35길 28, 2층

4.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: 승인 고시일

5.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

- 성북구 길음시장은 1972년 개설된 시장으로 준공후 48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 우려로 안전상 철거가 시급하고, 시장기능 및 지역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으로, 새로운 복합공간으로의 효율적 활용과 상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6. 입점상인보호대책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
- 관계서류 참조